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2일 13시 23분



목차

목차	2
기타분야	3
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신청 안내(지원 종료)	3
신청개요	3
신청기간	3
적용대상	3
신청방법	3
적용기간 및 인하율	3
소상공인 기준	3
소상공인확인서 발급	4

긴급민생지원 분야	소상공인 금융지원 분야	중소기업 금융지원 분야	기타분야
민생지원 Q&A			

- 기업세금납기연장지원(세관) ▪ 코로나19피해납세자 국세지원(세무서)
- 코로나19피해납세자 지방세지원(여수시) ▪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(여수시) ▪ 고용보험3개월납부유예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산재보험3개월납부유예 6개월간30감면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코로나19관련 국민연금보험료3개월납부유예(국민연금공단) ▪ 코로나19고용유지 지원금특별지원(고용노동부)
- 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지원금(고용노동부) ▪ **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국유재산사용료인하**
- 코로나19극복 영농지원 재난지원금(바우처)

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신청 안내(지원 종료)

신청개요

신청기간

2020. 4. 1. ~ 9. 28.(180일간)

적용대상

국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

신청방법

사용료 인하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확인서(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)를 제출

적용기간 및 인하율

2020. 4. 1. ~ 12. 31.까지의 사용료 80% 인하

-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: 인하된 금액만큼 환급
- 납부예정 또는 체납된 경우: 사용료 재산정하여 다시 납부고지

소상공인 기준

상시근로자수 및 평균연매출액이 아래 ①,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
(<http://www.yeosu.go.kr>)

① 상시근로자수 (소상공인법 시행령 제2조)	10명 미만	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
	5명 미만	그 밖의 업종
② 평균연매출액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)	120억 이하	식품·의복·가구 제조업, 전기·가스 공급업 등
	80억 이하	농업·광업·임업, 의료·시계·종이제품 제조업, 운수 및 창고업, 건설업, 금융 및 보험업 등
	50억 이하	도·소매업, 정보통신업 등
	30억 이하	부동산업,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
	10억 이하	숙박 및 음식점업, 교육 서비스업, 보건업, 사회복지 서비스업,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

소상공인확인서 발급

발급기관	중소벤처기업부장관
발급방법	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발급 가능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, http://sminfo.mss.go.kr)
대표전화	국번없이 1357(중소기업통합콜센터)

도로법, 하천법 등 국유재산법 이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등이 산정·부과되는 국유재산은 제외

※ 코로나19로 시설폐쇄·휴업 등의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사용료 면제

※ 「국유재산법」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

Yeosu Web Contents

